

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 
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
(김현아 의원 대표발의)

# 검 토 보 고

## 1. 회부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404호
- 나. 제 안 자 : 김현아 의원외 13명
- 다. 제안일자 : 2015년 3월 30일
- 라. 회부일자 : 2015년 4월 2일

## 2. 제안이유

- 가. 사회적 가치 실현과 공공성의 강화를 위한 상생과 호혜, 연대의 기본원리로 운영되는 새로운 경제영역으로서 사회적경제의 확산과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 우선구매의 실효성을 담보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가.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 우선 구매 비율을 총구매액의 100분의 5이내로 정함(안 제8조).

## 4. 검토의견(수석전문위원 윤 병 국)

### 가. 개정안의 개요

- 개정안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, 용역, 공사 등에 대한 서울특별시의 우선구매 목표를 총 구매액의 100분의 5 범위로 설정하여, 우선구매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을 간접적으로 지원·육성하고자 하는 것임

### 나. 우선구매제도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현황

- 우선구매는 사회적 약자와 시장에서의 약소기업 등 정책적으로 보호와 육성이 필요한 조직에서 생산한 물품·용역 등에 대하여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임.
- 현재 서울시 본청과 자치구, 투자·출연기관은 사회적경제기업, 「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」 상의 장애인기업 및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상의 중소기업, 「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」 상의 여성기업 등에 대하여 공동구매를 통한 우선적 구매를 시행하고 있음
  - 서울시 전체(본청과 자치구, 투자·출연기관 포함)의 공공구매 인증구분별 현황은 아래와 같음(표 1 참조)

## 〈표-1〉 2014년 공공구매 인증구분별 실적

[단위 : 천원]

인증구분	구매총액	비고
	5,893,026,832	100%
중증장애인생산시설제품	29,751,567	0.50%
사회적기업	61,465,860	1.03%
마을기업	826,723	0.01%
협동조합	4,957,137	0.08%
자활기업	622,156	0.015%
장애인기업	22,665,484	0.38%
여성기업	208,643,765	3.51%
소상공인	316,561,821	5.33%
소기업	873,056,208	14.70%
중기업	543,716,927	9.15%
인증외중소기업	2,538,151,373	42.73%
대기업	1,292,607,811	21.76%
외투법인	75,778	0.001%
비영리 단체	47,132,329	0.79%

- 「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」의 적용대상은 ‘시 본청·직속기관·사업소’, ‘시의회사무처’, ‘시 산하 투자기관 및 출연·출자기관’이며, 자치구는 포함되지 않음.
  
- 조례의 적용대상인 기관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실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, 2014년 기준으로 총구매액

대비 우선구매 비율의 평균이 1.02%임(표 2 참조).

〈표-2〉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실적

[단위 : 천원]

구분	현황	2013	2014
시 본청, 직속기관, 사업소	총구매액	2,249,364,378	2,109,458,998
	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실적	11,521,670 (0.51%)	18,084,307 (0.86%)
시의회 사무처	총구매액	9,827,137	5,893,816
	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실적	7,163 (0.07%)	87,405 (1.48%)
시 산하 투자기관 및 출연·출자기관	총구매액	2,038,266,078	2,024,267,884
	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실적	10,392,877 (0.51%)	24,210,014 (1.2%)
총계	총구매액	4,297,457,593	4,139,620,698
	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실적	21,921,710 (0.51%)	42,381,726 (1.02%)

-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에 대한 구매실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, 공공기관이 구매할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의 종류와 규모는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당장의 우선구매비율 확대는 일정한 한계가 있음.

다. 우선구매 비율의 설정(안 제8조)

- 안 제8조는 시 본청과 사업소 및 투자기관, 출자·출연기관 등

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회적기업, 협동조합, 마을기업, 자활기업, 중증장애인시설 등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에 대한 우선구매의 실효성을 강화하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판매와 매출액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.

- 안 제8조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우선구매비율을 특정하여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100분의 5라는 기준을 제시하고 그 범위 내에서 우선구매비율을 정하도록 하는 것임.
- 하지만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하여 100분의 5의 범위에서 우선구매 비율을 정하는 안 제8조는 시 본청과 시 투자기관 및 출연·출자기관 등에 대하여 의무를 부여하는 사항으로 법령에 규정 또는 조례로의 위임이 필요하다는 서울시의 의견제시가 있음.<sup>1)</sup>
- 한편, 시의회 입법·법률고문의 자문결과에 따르면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에서 추상적 의무로 규정하던 것을 구체화한 것으로 100분의 5 범위 내에서의 촉진은 일정 범위 내에서 촉진하도록 권유·권장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적법하다는 의견임

---

1) 현재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우선구매비율을 정하고 있는 법령은 「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」 제10조 제3항으로 ‘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’에 대하여 총 구매액의 100분의 1을 우선구매비율로 규정하고 있음. 그 외에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우선구매를 정하고 있는 법령은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제12조와 「협동조합 기본법」 제95조의2에서 ‘사회적기업’과 ‘사회적 협동조합’의 제품에 대한 구매를 촉진토록 하면서, 구매계획의 수립과 전년도 구매실적의 통보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음.

## 라. 종합의견

- 국회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이 계류 중에 있으며, 제안된 사회적경제기본법안 모두가 우선구매 비율을 규정하고 있어 「사회적경제기본법」이 제정된다면 근거법령의 부존재 문제는 해소될 수 있음.

〈표-3〉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의 우선구매 비율 관련 규정

<p>유승민의원 발의안</p>	<p>제21조(공공기관의 우선구매)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별 총구매액(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, 공사비용은 제외한다)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「협동조합 기본법」 제3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여야 한다.</p>
<p>신계륜의원 발의안</p>	<p>제33조(공공기관의 우선구매등)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별 총구매액(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, 공사비용은 제외한다)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「협동조합 기본법」 제3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여야 한다. ⑤ 그 외의 사회적경제조직의 제품과 서비스의 우선구매의 대상과 기준, 규모와 절차 등은 공공성과 사회적공헌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p>
<p>박원석 의원 발의안</p>	<p>제26조(공공기관의 우선구매)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별 총구매액(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, 공사비용은 제외한다)의 100분의 7의 범위에서 이 법 제2조에 따른 사회적경제조직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여야 한다</p>

- 다만, 현재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종류와 규모

가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급격하게 우선구매비율을 상향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, 사회적경제기업 제품과 중복되는 우선구매대상 조직(여성기업, 장애인 등)의 구매율이 감소할 수 있음.

- 따라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우선구매비율을 현재보다 상향하는 것은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지원과 활성화 방안으로 타당하나, 100분의 5 범위에서 우선구매비율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합리적 품질의 보장 여부, 사회적경제기업 외에 우선구매대상 조직(여성기업, 장애인 등)의 구매율 감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할 필요가 있음.